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·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2610
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4. 11. 13.

제 출 자 : 금 천 구 청 장

## 1. 제안이유

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소집되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, 재난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위원회의 설치를 임의규정으로 정비(안 제8조제1항)
- 위원회를 안건 발생 시 구성·운영하는 비상설로 전환(안 제8조제2항 신설)
- 비상설 위원회 전환에 따른 위원의 임기, 해촉, 소집요건 관련 조항 정비(현행 제10조 및 제11조 삭제)
-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정비(안 제2조제2호나목, 제7조제2항, 제8조제1항제1호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

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

다. 합의기관: 해당없음

라. 기 타

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첨부

2) 입법예고(2024. 10. 16. ~ 2024. 11. 5.) 결과: 의견없음

3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별도첨부

4) 규제사전심사: 원안동의(기획예산과)

5) 부패영향평가: 원안동의(민원감사담당관)

6) 성별영향평가: 원안동의(가족정책과)

서울특별시 금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·지원에  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금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·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나목 중 “지원 위원회”를 “지원위원회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 후단 중 “범위 안”을 “범위”로 한다.

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“위원회”를 둔다”를 “위원회를 둘 수 있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제1호 중 “재난 상황”을 “재난상황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위원회는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·운영하고, 심의·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.

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“필수업무”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서울특별시 금천구민(이하 “구민”이라 한다)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.</p> <p>가. (생 략)</p> <p>나.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<u>지원 위원회</u>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정하는 업무</p> <p>3. (생 략)</p> <p>제7조(지원 사업) ① (생 략)</p> <p>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전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가. (현행과 같음)</p> <p>나. ----- ----- ----- <u>지원위원회</u>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지원 사업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</p>

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"위원회"를 둔다.

1.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에 관한 사항
2. 3. (생략)

<신설>

제10조(위원의 임기) 위촉직 위원 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제11조(위원의 해촉)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
----- 범위 -----

제8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-----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1. 재난상황 -----
2. 3. (현행과 같음)

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·운영하고, 심의·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.

<삭제>

<삭제>

- |   |  |
|---|--|
| <p>3. <u>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</u></p> <p>4. <u>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</u></p> |  |
|---|--|

서울특별시 금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 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3조제2항제1호  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써  
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본 개정안은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 
제13조제2항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 
해당하여,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함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일자리청년과 일자리기획팀 정희선
연 락 처	2627 - 2042

# 현행조례

## 서울특별시 금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·지원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2. 12. 30.] [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287호, 2022. 12. 30., 일부개정]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·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재난이 발생한 경우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·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22.12.30.>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개정 2022.12.30.>

1. “재난”이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.
2. “필수업무”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서울특별시 금천구민(이하 “구민”이라 한다)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.
  - 가. 「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
  - 나.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정하는 업무
3. “필수업무 종사자”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 - 가. 「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
  - 나. 제8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람

### 제3조(구청장의 책무)

- ① 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<개정 2022.12.30.>
-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적용대상)**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, 지역공동체 유지, 구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업무로 서울특별시 금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.<개정 2022.12.30.>

### 제5조(실태조사)

- ① 구청장은 필수업무 선정,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, 근무환경,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<개정 2022.12.30.>
-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### 제6조(지원계획수립 등)

① 구청장은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.<개정 2022.12.30.>

1.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
2. 분야별 시책,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
3.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
4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<개정 2022.12.30.>

[제목개정 2022.12.30.]

#### **제7조(지원 사업)**

①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<개정 2022.12.30.>

1.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
2.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, 연구
3.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
4.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**제8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**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“위원회”를 둔다.<개정 2022.12.30.>

1.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에 관한 사항
2. 필수업무 종사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

#### **제9조(위원회 구성)**

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개정 2022.12.30.>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,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<개정 2022.12.30.>

1.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
2.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
3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**제10조(위원의 임기)**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**제11조(위원의 해촉)**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

**제12조(위원회 운영)**

-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. 다만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<개정 2022.12.30.>
  - 1. 구에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
  - 2.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
  - 3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.<개정 2022.12.30.>

**제13조(수당 등)**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**제14조(협력체계 구축)**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,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<개정 2022.12.30.>

**제15조** <삭제 2022.12.30.>

# 관계 법령

##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·지원에 관한 법률 ( 약칭: 필수업무종사자법 )

[시행 2021. 11. 19.] [법률 제18182호, 2021. 5. 18., 제정]

**제9조(지역위원회)** 지역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소속으로 시·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(이하 “시·도 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고, 시장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소속으로 시·군·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(이하 “시·군·구 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1.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의 유형,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
2. 해당 지역에서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
3. 해당 지역의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**제10조(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** ① 시·도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·도지사가 되고, 시·군·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된다.

② 시·도 위원회 및 시·군·구 위원회(이하 “지역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1. 해당 지역에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4조에 따른 대규모재난이 발생한 경우
2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
3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